



유럽, 중국 및 일본의 차별적 보험 산업 규제 시정 요구

이정환 선임연구원

- 유럽은 중국에 대해서는 차별적 보험산업 규제와 “보이지 않는” 진입 장벽 철폐 또는 완화를 요구하였고, 일본에 대해서는 자국 특정 보험회사에 대한 호혜적 대우 시정을 요구
- 중국 보험시장의 높은 성장세로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시장경쟁 심화 및 외국계 보험회사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외국계 보험회사의 성장이 저해됨.
 - 중국 생명보험시장¹⁾은 2009년 9월에 비해 2013년 9월 현재 수입보험료 기준 32.6% 성장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중국계 중소형 보험회사와 외국계 보험회사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계 중소형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함.
 - 국내 보험회사(30개→42개)와 외국계 보험회사(24개→28개) 모두 증가하는 가운데 중소형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이 2009년 9월 16.99%에서 2013년 9월 24.06%로 상승함.

〈표 1〉 중국보험시장 시장점유율

(단위: 개)

구분	중국계				외국계		계	
	대형사(Top5)		중소형사					
2009. 9	5	78.1%	25	17.0%	24	4.9%	54	100.0%
2013. 9	5	70.8%	37	24.1%	28	5.1%	70	100.0%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성장이 중국계 중소형 보험회사에 비해 부진한 것은 중국의 보험산업 규제 강화 때문임.
 - 중국은 2010년부터 『보험사지분관리방법』²⁾ 및 『방카슈랑스 관련 규정』³⁾등의 규정을 발표

1)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을 제외. 같은 기간 건강보험은 96.0%, 상해보험은 96.5% 성장

2) 2개 이상의 보험회사가 동일 기구의 통제 시 이익 충돌이 있는 동종 보험 업무를 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

■ 2013년 10월 31일 유럽보험협회와 유럽재보험협회는 시장 진입 절차 및 인허가, 자본금, 자회사의 거래, 특정 시장 진입, 외화자금 유입, 특정 상품 독과점 등과 관련된 차별적 규제 철폐 또는 완화를 중국에 요구

- Joint Venture 관련 규제 완화와 중국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cap) 철폐를 요구
 - 현재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 시장 진입은 Joint Venture 설립으로 제한(최대 지분 50%)되고 있으며 단일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보험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지분은 20%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지분 규모는 25%를 초과할 수 없음.
 - 유럽보험협회와 유럽재보험협회는 투자자 또는 주주가 지분율을 결정할 것을 요구
- 특화(specialized) 보험회사⁴⁾에 적용되는 최소자본요건 규정 완화
 - 1~2개 상품만을 판매하는 특화 보험회사와 일반 보험회사간의 차이가 없으므로 특화 보험회사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최소자본요건을 축소하여야 함.
- 손해보험 지사를 자회사로 변경하는 절차를 단순화 해 줄 것을 요구
 - 지사를 자회사로 변경하는 데 규정상 문제점은 없으나 복잡한 절차, 과다 시일 소요, 투명성 결여로 실질적 문제점이 많음.
- 외국계 보험회사의 자회사 거래 규제(재보험 거래, 자산 거래) 완화
 - 국내 보험회사의 자회사 거래에는 중국 감독당국의 사전적 허가가 필요 없으나 외국계 보험회사는 사전 승인이 필요함.
- 외국계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시장 진입 허용
- 외화자금 유입 규제 완화
 - 중국으로의 외화자금 유입은 보험감독 당국의 사전 승인에도 불구하고 외화감독 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 함.
- 자연재해 등급 투명성 제고 요구
 - 유럽계 재보험회사들은 자연재해 등급과 중국 정부의 책임 영역 불투명을 우려하여 동 시장 진입에 대해 주저함.
- 외국계 보험상품 판매 브로커의 진입 제한 완화
 - 외국계 보험상품 판매 브로커에 대한 1억 5,000만 위안 이상 자본 규정은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WTO 협정에 따라 국내 브로커와 차별 없는 규정 적용을 요구

3) 보험회사 파견 설계사의 은행 판매 활동을 불허하고 각 은행지점에서 최대 3개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판매하도록 규정

4) 예를 들어 건강보험 전문 보험회사를 말함.

- 대표사업본부 설립 요건 완화
 - 현재 Joint Venture 설립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대표사업본부를 운영하여야 함.
 - 중국수출입신용보험공사와 중국인민보험공사(PICC)의 수출 신용보험 독과점 완화
 - 외국계 손해사정회사 진입 제한 완화
- 일본의 경우 유럽보험협회와 유럽재보험협회는 강력한 시장 경쟁자인 일본우정주식회사 및 공제에 대한 차별적 특혜 시정을 요구
- 일본우정주식회사(JPH: Japan Post Holding) 특혜 시정 요구
 - 일반 민영보험회사의 JPH 네트워크 접근 요구, JPH 개발 상품에 대한 호혜적 허가
 - 세제, 파산시 계약자 보호, 법규 및 감독 측면에서 공제에 대한 차별적 특혜 시정을 요구
-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차별적 보험산업 규제와 관련한 요구사항이 없었음.
- 유럽보험협회는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고 외국계 보험회사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유럽보험협회는 시장 성장성과 규모를 감안하여 중국 보험시장을 핵심 시장으로, 일본 보험시장을 중요 시장으로 분류한데 반해 우리나라 보험시장에 대해서는 특정 등급을 언급하지 않음.

(유럽보험협회 10/31, 중국보험감독관리 위원회)